

운영위원회 의사록

개요 1

안건 1

의장 및 운영위원 서명 2

개요

- 일시: 2025년 3월 16일 오전 10시 06분 (UTC+9) (의결 완료 일시)
 - 안건 제안 및 심의 기간: 2025년 3월 9일 - 3월 14일
 - 안건 투표 및 의결 기간: 2025년 3월 15일 - 3월 16일
- 정관 제31조에 근거하여 전자통신매체로 안건 논의 및 의결 진행
 - DIsord 서버의 운영위원회 채팅방에서 안건 제안 및 논의
 - 이후, Discord 의 투표 기능 활용하여 각 안건 투표 및 의결
- 참여인원: 운영위원회 구성원 4인 전원 - 한영빈, 조성수, 문성준, 유현아
- 작성(서기): 한영빈

안건

1. 회비규정 제정 심의(안)

붙임1 과 같이 회비규정을 제정 할 것을 제안함.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2. 회비 금액 산정(안)

정기회비는 분기별 3만원으로 정할 것을 제안함.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3. 운영위원 보통재산 출연(안)

운영위원의 경우 각자 7만원씩 단체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고,

이를 분기별 회비 3만원 1회분과 함께 선납 할것을 제안함. (총 10만원 선납)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4. 단체 자금 임시 계좌 개설(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단체 자금 임시 계좌 개설을 제안함

- 대표 명의의 모임통장(토스뱅크 모임통장,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등등) 개설하여 회비 등에서 발생한 단체 자금 관리.
- 모든 운영위원이 모임통장 거래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단체 명의 계좌를 이르면 3월 안으로 늦어도 4월 안으로 개설하여 단체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두 이전하는 조건.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5. 주사무소 선정(안)

단체의 주사무소로 개러지 당산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으로 할 것을 제안함.

주사무소 계약은 12개월로 하고 임차료는 일시납부 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납한 보통재산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함.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의장 및 운영위원 서명

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장과 참석 운영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다.

2025년 3월 16일

포스포올

의장(대표) 한영빈	운영위원 조성수	운영위원 문성준	운영위원 유현아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회비규정

2025년 03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스포올(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비: 모든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며, 분기별로 부과된다.

제4조 (회비금액과 납부시기)

- ① 정기회비 납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한다.
- ② 정기회비는 각 분기의 첫 번째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 까지 남은 금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납부방법)

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좌이체
2. 단체가 정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3.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정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

제6조 (회비의 환불)

납부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1.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단체를 자진 탈퇴하는 경우, 탈퇴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탈퇴 시점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2.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7조 (보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회원 현황을 모든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 (개정 또는 폐지)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